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84호 2017. 3. 22.(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360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361호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거창군 조례 제2362호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12

거창군 조례 제2363호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거창군 조례 제2364호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21호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8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3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35
 거창군 고시 제2017-35호 마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37
 거창군 고시 제2017-36호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38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383호 군도 16호선(운정~자하마을)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39
 거창군 공고 제2017-386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1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44
 거창군 공고 제2017-388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18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47
 거창군 공고 제2017-389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5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50
 거창군 공고 제2017-393호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3
 거창군 공고 제2017-400호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58
 거창군 공고 제2017-407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1

회 람									
--------	--	--	--	--	--	--	--	--	--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3월 22일

거창군 조례 제2360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u><신 설></u></p>	<p>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u></p>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6
----------	--------

발의일자	2017. 2. 14.
발 의 자	김종두 의원 외 10명

1. 제안이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비판 여론에 따라 사실상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1) 「지방자치법」 제33조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집행부 의견조회: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2. 10.~2.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도내 개정현황

○ 도내 개정완료(8): 경남도, 김해, 밀양, 통영, 고성, 창녕, 하동, 합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3월 22일

거창군 조례 제2361호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재원)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적립금의 조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4.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적립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적립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적립금의 존속기한)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3조제1항 관련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15년도 결산기준

- 일반회계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0	0	0	0	0	0
세출	적립금	20	20	20	20	20	100
	소계(a)	20	20	20	20	20	100
세입	출연금	20	20	20	20	20	100
	소계(b)	20	20	20	20	20	100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안 번호	2017~1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립금의 재원(안 제2조)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3년 평균 초과분),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나. 적립금의 조성(안 제3조)

-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1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
-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
-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
-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

다. 적립금의 사용(안 제4조)

- 사용요건: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 한 회계연도 사용할 수 있는 한도(적립총액의 50퍼센트)
- 사용용도
 -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 긴급한 대규모 사업비 등

라.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제9조)

○ 위원장 부군수, 8명 이내 구성

마. 적립금의 존속기한(안 제10조)

○ 2021년 12월 31일까지(5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5년간 100억원 목표, 매년 20억원 적립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1. 23.~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현황

○ 제정 완료(2): 경남도, 고성군

○ 입법예고(10): 양산, 창녕, 남해, 밀양, 의령, 산청, 합천, 함양, 함안, 하동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3월 22일

거창군 조례 제2362호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과 별거하며 사실상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음으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주민 홍보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 관련 조문: 제7조(지원사업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134	134	134	134	134	670
세출 균비(a)	134	134	134	134	134	670
세입 균비(b)	0	0	0	0	0	0

- ### 3. 관련 의견: 거창군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고독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지원대상자 조사: 15,600명 30,000천원
- 심리상담 및 치료: 30,000천원
-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1,496명 51,012천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05대 14,696천원
-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 2명 8,000천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7~7
----------	--------

발의일자	2017. 2. 13.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나. 예산조치: '17년 예산 74백만원 확보(60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2. 13.~2.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전국 제정현황: 60곳(거제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3월 22일

거창군 조례 제2363호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6조”를 “「아동복지법」 제1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관한 제반사항”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정수는 읍·면별 2명으로 하되, 읍은 인구 1만명 초과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동지도원”을 “아동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거창군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u>제14조</u>----- ----- ----- ----- -----</p>
<p>제2조(위원회의 기능) <u>거창군 아동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u>관한 제반사항</u> 연락과 조정 2.~4. (생략)</p>	<p>제2조(위원회의 기능) <u>거창군 아동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관한</u>--- ----- 2.~4.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u>위원회</u>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한 30명 이내의 읍·면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u> <u>각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⑤ (생략)</p>	<p>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u>위원</u> <u>회의 정수는 읍면별 2명으로 하되, 읍은</u> <u>인구 1만명 초과 5천명당 1명을 추가</u> <u>할 수 있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u> <u>명을 두고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u>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u>의 후견인 및 후원자 결연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u>아동복지지도원</u>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p> <p>② (생략)</p>	<p>제4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 -----</p> <p>1. ----- ----- 2. ----- -----</p> <p>3. <u>보호대상아동</u>----- -----</p> <p>4. ----- -----</p> <p>5. <u>아동복지전담공무원</u>----- 6.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u>다만,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6조(아동위원의 임기) ----- -----<단서 삭제></p>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4
----------	---------

제출연월일	2017.2.1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아동위원회의 아동위원 정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조문 변경함(안 제1조)

○ 「아동복지법」 제6조 ⇒ 「아동복지법」 제14조

나. 읍·면의 인구에 따른 공정한 아동위원 수를 정함(안 제3조)

○ 읍면별 2명으로 하되, 읍은 인구 1만명 초과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2. 29.~'17. 1.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 개정완료(13): 창원, 김해, 진주, 통영, 사천, 밀양, 산청, 남해,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3월 22일

거창군 조례 제2364호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있고”를 “있고, 금연교육 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를 “홍보물 제공 및 여성 전용 상담실·상담원 운영, 청소년·여성 대상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p> <p>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p> <p><삭 제></p>
<p>제7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흡연 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p> <p>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u>있고</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u>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u></p> <p>③~④ (생략)</p> <p>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 ----- -----<u>있고, 금연교육 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u>----- -----</p> <p>② ----- ----- ---<u>홍보물 제공 및 여성 전용 상담실. 상담원 운영, 청소년·여성 대상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p>
---	---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5
----------	---------

제출연월일	2017. 2. 1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의 표시와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중복 기재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규칙으로 재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그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표시 규정 삭제함(안 제6조)

- 금연구역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령(별표 2)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삭제
- 조례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규정 삭제

나. 흡연구역 등의 설치규정 삭제함(안 제7조)

-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별표 2)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며, 소유자 등에게 흡연실 설치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위임 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문제 해소(흡연구역 ⇒ 흡연실) 위해 삭제
-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법령위반 규정 삭제

다. 과태료 규정 정비함(안 제10조)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위반 소지를 없앴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라목2)
- 위임내용: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만 1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항, 제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1. 24.~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8조제1항·제2항)

(6) 전국 개정현황

○ 완료(11): 인천중구, 광주북구, 울산동구, 평택, 양평, 정읍,
화순, 나주, 청송, 구미, 영덕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3월 22일

거창군 규칙 제1221호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중 “m”를 “미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금연구역 범위) 「<u>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의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공원: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 2.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4. 그 밖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p>제3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p>	<p><u>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u></p> <p>제1조(목적) ---- 「<u>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u>」 ---- -----</p> <p>제2조(금연구역 범위) 「<u>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 ----- --미터-- 3. ----- ----- --미터-- 4. ----- ----- ----- <p><삭 제></p>

<삭 제>

【별표】

안내표지판의 기준(제3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2. 안내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안내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가. 도시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1)

<p>도시공원 600x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 격: 60cm x 40cm□ 전용색상<ul style="list-style-type: none">바 탕(M/3 Y/12)테두리(M/50 Y/50)금연구역(C/30 M/70 Y/90 K/40) 학교주변(K/60)□ 전용서체: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ul style="list-style-type: none">본문(윤고딕130)영문(윤고딕130)□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	---

가-1.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600mm x 170mm □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구조 표 지 판 : 표기사항 원목 샌트블라트 가공 판테두리 : 오일스텐인 처리 지도부분 : 투명 아크릴 배연인쇄, 볼트고정 지 목 : 목재에 오일스텐인처리
--	--

<내용예시>

- ◆ 도시공원 금연구역입니다.
-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35cm x 9.5cm □ 전용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 탕(Y/100) 픽토그램(C/60 M/30) 금지구역(C/70 Y/20) □ 전용서체: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	--

<내용예시>

- ◆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35cm x 9.5cm □ 전용색상 : 바 탕(C/70 Y/75) □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 재 질 :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부착
---	--

라.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p>학교주변 600x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60cm x 40cm □ 전용색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 탕(M/3 Y/12) 테두리(M/50 Y/50) 금연구역(C/30 M/70 Y/90 K/40) 학교주변(K/60) □ 전용서체: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	--

<내용 예시>

- ◆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50m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 ◆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그 밖에 금연구역 바닥재 안내표지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 45cm x 45cm(바탕 청색) / 42cm x 42cm(바탕 노랑) (서체 ; HY헤드라인M / Adobe 고딕 Std 출입구~거창군)
---	---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7~5
----------	--------

제출일자	2017. 2. 14.
제 출 자	보건소장

1. 제안 이유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사항을 다시 규칙으로 재 위임하고 있어 그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삭제함.

(안 제3조, 별표)

- 조례로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법령위반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함
- 금연구역 표지판 기준이나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별표 2),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제7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1. 24.~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별지 서식)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3. 22.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원촌2길 53-60 외 2건(부여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477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원촌2길 53-60	2009-04-01	2017-03-22	사액서원인 포충사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 영된 두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17	경상남도거창군남하면광 주대구고속도로128(살피 터널 관리사무소)	2016-09-30	2017-03-22	국토교통부노선명(제 2015-981호)을 이용하여 명 명함	
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0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4길 86-4	2009-04-01	2017-03-22	행정구역명 마상리가 반영된 네번째 도로	

마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4년 착수 마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3월 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마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면소재지의 정주 서비스 강화,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제고 하는 농촌계획 수립 및 면소재지의 기능 강화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구역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일원
4. 소재지 규모 : 법정리 7개, 자연마을 7개
5. 면적 : 470.9ha (농경지 145.9ha, 임야 264ha, 기타 61ha)
6. 가구 / 인구 : 275호(농가 163호, 비농가 112호), 인구 569명
7. 사업비 : 6,200백만원(국 4,340, 도 558, 군 1,302)
8. 사업의 효과 : 면소재지 기능강화로 행정·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과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
9.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4년간)
10. 시행자 : 거창군수
1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
12. 주요사업개요
 -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리복합스포츠공원, 다목적광장, 소곡주차장 등
 - 나. 지역경관개선사업 : 음식특화거리 조성, 안내판설치, 마리삼거리 정비, 마을별 경관개선사업 등
 - 다. 지역역량강화 사업 : 교육, 선진지견학, 컨설팅, 홍보, 마을경영지원 등
13.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940-8257)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1일

거 창 군 수

1. 지적측량대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2017년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지구(완대지구, 창선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완대지구 : 경남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340번지 일원
 - 창선지구 : 경남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347번지 일원
 - 나. 면 적 : 341필지, 270,425㎡
 - 완대지구 135필지, 63,155㎡ / 창선지구 206필지, 207,270㎡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5. 기 타
 - ✓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군도16호선(운정~지하마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6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군도 16호선(운정~지하마을) 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남상면 무촌리 일원
- 다. 사업내용 : 도로정비 L=1.15k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장)

2. 보상내용

-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남상면 무촌리 일원
-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 · 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3. 16. ~ 2017. 3. 31.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7)
-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과 지번은 추후 지적 분할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일련번호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대상상	지적(㎡)		소유자	
		읍,면	리,동	본번	분할	대상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합계		50필지							10,060		
1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54	354-3	과	670.0	151.0	거창군 거창읍 중산2길 ***-**	권 중 *
2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56	356-3	과	2127.0	242.0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 104동 ****호(코아루)	이 점 *
3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56-1		도	139.0	139.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정 학 *
4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56-2	356-4	과	18.0	1.0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102번길 ***(명륜동)	백 정 *
5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60-7	360-8	대	43.0	2.0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	강 남 *
6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72-11	372-12	답	416.0	75.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1901번길 **, ***호(진흥목화아파트)	권 중 *
7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73	373-1	답	1770.0	5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산길 ***	권 준 *(1630/177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산2길 ***-**	권 중 *(140/1770)
8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94	394-1	답	1854.0	43.0	인천시 연수구원인재로 **, 2동 ****호(삼성아파트)	황 현 *
9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93	393-5	답	735.0	38.0	거창읍 중산2길 ***-**	권 중 *
10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92	392-4	답	1049.0	49.0	거창읍 중산2길 ***-**	권 중 *
11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91	391-3	답	1181.0	74.0	거창읍 중산2길 ***-**	권 중 *
12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90	390-1	답	575.0	102.0	거창읍 중산길 ***	권 준 *
13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89	389-4	답	469.0	176.0	거창읍 중산길 ***	권 준 *
14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405-8	405-13	답	957.0	4.0	대구시 달서구 한실로 ***, 301동 ***호(대곡사계절타운)	김 영 *
15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405-9	405-14	답	1075.0	38.0	거창군 거창읍 중산2길 ***-*	김 경 *
16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405-10	405-15	답	1236.0	116.0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김 경 *
17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405-11	405-16	답	580.0	67.0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김 경 *
18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405-12	405-17	답	1928.0	651.0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김 경 *
19	토지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408	408-2	답	1582.0	10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산2길 ***-**	권 중 *
20	토지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13	113	답	886.0	58.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3길 ***-**	문 기 *

	지				4-1 3	4-2 0						
21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63 3-1 7	163 3-2 2	답	521.0	154.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3길 ***-**	문 기 *	
22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63 3-1 5	163 3-2 1	답	1414. 0	505.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3길 ***-**	문 기 *	
23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64 3-5	164 3-6	답	167.0	89.0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 102 동***호(대우아파트)	이 현 *	
24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64 4	164 4-2	전	821.0	275.0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 102 동***호(대우아파트)	이 현 *	
25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64 1-3	164 1-3	답	60.0	60.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1길 ***	이 상 *	
26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산 18- 1	산 18- 2	임	639.0	7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 102 동 ****호(베어스타운)	임 종 *	
27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60 9	160 9-1	과	5496. 0	64.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1길 ***	이 상 *	
28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60 5	160 5-1	과	684.0	126.0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6길 ***, 102 동 ****호(베어스타운)	임 종 *	
29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60 4	160 4-1	과	873.0	135.0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 105동 **** 호(코아루)	김 영 *	
30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60 1	160 1-2	과	9511. 0	187.0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	김 창 *	
31						160 1-3	과		317.0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	김 창 *	
32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60 0	160 0-1	전	754.0	261.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1길 ***	이 영 *	
33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59 9-1	159 9-6	전	688.0	187.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1길 ***	이 영 *	
34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59 9-5	159 9-7	답	259.0	3.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1길 ***-*	이 호 *	
35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산 13- 2	산 13- 4	임	5580. 0	1527.0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	김 창 *	
36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94 9	194 9-1	답	2679. 3	495.2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1길 ***	이 정 *	
37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97 5	197 5-1	답	1265. 8	7.4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3길 ***-*	정 종 *	
38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97 6	197 6-1	답	1716. 6	723.1	부산시 수영구 망미배산로70번길 **, 102동 ***호(한신아파트)	김 정 *	
39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97 7	197 7-1	답	2158. 6	332.7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3길 ***-**	문 기 *	
40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97 8	197 8-1	답	1130. 8	199.9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 101동 ***호 (대곡청구체네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205 동 ***호(트리비아아파트)	이 은 *(1/2) 이 경 *(1/2)	
41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97 9	197 9-1	답	1449. 1	303.6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1길 **, B동 *** 호(실버타운)	이 창 *	
42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98 0	198 0-1	답	2375. 2	409.0	부산시 수영구 망미배산로70번길 **, 102동 ***호(한신아파트)	김 정 *	
43	토 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98 1	198 1-1	답	1051. 4	161.8	부산시 수영구 망미배산로70번길 **, 102동 ***호(한신아파트)	김 정 *	

44	토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982	1982-1	답	1946.0	378.7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1길 ***	김 옥 *
45	토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983	1983-1	답	3301.3	395.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1길 **, 1***호 (삼아아파트)	우 동 *
46	토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406-1		답	7.0	7.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3길 ***-	김 봉 *
47	토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406	1406-4	과	27.0	7.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1길 **	남 태 *
48	토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404-1	1404-4	전	1235.0	46.0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	왕 두 *
49	토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403-1	1403-5	과	495.0	305.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1길 **	남 태 *
50	토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517-1	517-8	전	1315.0	152.0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 418동 1***호(주공아파트)	이 문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 - 21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03. .

거창군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	거창	대동	소로	2	21	190.0	8.0	1,548	거창읍 대동리 757-1 ~ 거창읍 대동리 57	건설부고시 1971-383호 (1971.06.28)	2017.03~ 2018.12.31

2. 사업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소로 2-2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4,352	1,548					
1	거창읍 대동리	757-1	도	628	66		거창군			
2	"	765-4	도	154	19		거창군			
3	"	757	대	185	1	거창군 거창읍 시장길 33-3	최민옥			
4	"	964-62	도	62	39		국(건설부)			
5	"	749-3	대	129	93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23	이상호			
6	"	756	대	139	58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56	윤정임			
7	"	749-12	답	214	6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84	김성출			
8	"	751-2	대	122	63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51-2	조병권 외1인			
9	"	751-8	전	284	106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51-8	조경옥			
10	"	751-11	전	20	16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51-7	김정규			
11	"	751-5	대	213	102	거창읍 대동리 765 라일락아파트 이동202	박원제 외2인			
12	"	751-10	전	140	140		거창군			
13	"	751-22	전	15	1		거창군			
14	"	751-23	전	2	1		거창군			
15	"	759-8	대	175	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75-25 (신암동)	정춘화			
16	"	749-16	답	63	63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25-2 강만현대아파트 202-2002	신기재			
17	"	751-20	도	171	8		거창군			
18	"	749-15	도	242	10		거창군			
19	"	749-6	답	177	167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25-2 강만현대아파트 202-2002	신기재			
20	"	62-6	전	497	497	거창군 거창읍 정장2길 31	김광옥			
21	"	57	전	720	91	거창군 거창읍 상동6길 17, 202호(유빌리지2차)	신용휘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0), FAX(055-940-3579), E-mail : hds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공고 제2017-388호

도 시 계 획 시 설(교통시설:소로2 - 189호선)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89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03. 17.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189호선)	가조	마상	소로	2	189	251.0	8.0	2,623	가조면 마상리 316-7 ~ 가조면 마상리 860-1	경상남도 고시 1979-115호 (1979.05.24)	2017.03~ 2018.12.31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2-189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합계	-	-	-	27,201	2,623					
1	가조면 마상리	316-7	도	813	5		거창군			
2	"	316-24	도	48	48		거창군			
3	"	316-11	답	169	66		거창군			
4	"	314-1	답	3397	436	대구 광역시 남구 대명남로 93	최이순			
5	"	5	답	2025	2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112	하인문 외1인			
6	"	861-28	도	4039	32		국(국토교통 부)			
7	"	173	답	1580	554	울산 남구 신정동 1639-4 문수로 아이파크 107-1302	이운기			
8	"	147	대	154	16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47	허기선			
9	"	174-2	전	196	149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79	김일근			
10	"	172	전	1980	467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 내리 350-1삼보아파트 101-1205	이충번 외 2인			
11	"	171	전	1745	350	거창읍 강양4길 10, 502호	손정선 외 1인			
12	"	170-3	답	2962	214	가조면 지산로 1470	장사준			
13	"	169	답	836	16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89-1	장사준			
14	"	170-1	답	1078	72	서울동작구 상도동 335-111	어창선			
15	"	860-10	천	236	4		국(국토교통부)			
16	"	860-19	천	155	2		국(건설부)			
17	"	860-21	천	45	1		국(건설부)			
18	"	860-20	천	471	111		국(건설부)			
19	"	860-1	천	5272	78		국(국토교통부)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0), FAX(055-940-3579), E-mail : sbin02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2) 성 명 :
- 3) 연락처 :
- 4)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공고 제2017-389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 - 59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59호선외 1개소)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03. 17.

거창군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59호선)	거창	장팔	소로	3	59	403.0	6.0	2,523	거창읍 장팔리 1463-3 ~ 거창읍 장팔리 84-2	경상남도고시 1992-465호 (1992.12.24)	2017.03~ 2018.12.31

2. 사업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설계도 : 기재생략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소로 3-59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2,208	2,523					
소계	-	-	-	16,922	1,877					
1	거창읍 장팔리	84-2	도	202	20		거창군			
2	"	1463-3	구	169	3		국(건설부)			
3	"	84-5	답	40	34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80	박판금			
4	"	83	전	409	3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81	김원화			
5	"	59	구	2,561	324		국(농수산부)			
6	"	57	답	3,381	323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574	오성태			
7	"	80	대	344	5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99-1 김천주공아파트 105-1103	김정숙			
8	"	1465	도	2,995	50		국(건설부)			
9	"	64	전	456	15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76	안성수			
10	"	63	전	698	26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4-1푸르지오 2차 203-1002	박만수			
11	"	1057	도	357	235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057	이재찬			
12	"	608	구	1,068	96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562	이창우			
13	"	612-3	답	157	41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566	장인오			
14	"	612-5	도	20	1		거창군			
15	"	1465	도	2,995	332		국(건설부)			
16	"	104	대	270	32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10길 22,102동603호 (명촌동,편촌리비에르1차 APT)	박성일 외 1인			
17	"	105	대	97	3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35	강봉우			
18	"	105-2	대	11	11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35	강봉우			
19	"	105-1	대	110	32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25,1층	허세열			
20	"	106	전	304	36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40	백정기			
21	"	107	전	278	15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57	신중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소계	-	-	-	15,286	646					
22	거창읍 장팔리	100	전	212	65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08	서명탁			
23	"	1464	구	9,388	245		국(농수산부)			
24	"	152-1	도	471	30		거창군			
25	"	152	답	908	6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35	이만수			
26	"	1466	도	278	9		국(건설부)			
27	"	99-2	전	598	24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08	서명탁			
28	"	153	답	990	41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35	이만수			
29	"	98-2	전	314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78-1 삼익아파트 1220	서보균			
30	"	153-1	도	33	32		거창군			
31	"	98-1	도	8	8		거창군			
32	"	154-1	도	32	14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36	조선박 외 1인			
33	"	97	전	46	11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2길 122-6	오재우			
34	"	183-3	도	120	65		거창군			
35	"	1467	도	1,131	82		국(건설부)			
36	"	95-1	도	255	1		거창군			
38	"	185-2	도	502	2		거창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0), FAX(055-940-3579), E-mail : hds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계획조례」
2. 개정이유 : 자족지지역의 학교 건폐율 완화로 토지효율성 증대.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도시건축과)
 - 전화 : 055-940-3583, 팩스 : 055-940-3579, 이메일: cchojh@korea.kr

붙 임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7-
----------	-------

제출연월일	2017. 03.
제 출 자	도시건축과장

1. 제안이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 완화로 토지효율성 증대

2. 주요내용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안 제56조의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7. 3. 17 ~ '17. 4. 6 (20일간)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 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56조의 3(자연녹지지역에서의 학교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p> <p>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p> <p>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p>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1일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문화 진흥을 위해 조성된 거창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명칭과 위치
- 나. 정의, 업무 및 기능
- 다. 개장 및 휴장, 관람 및 운영시간
- 라. 체험료의 징수 등, 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 마. 행위제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 바. 체험장의 운영 및 위탁관리 등
- 사. 준용규정, 부칙
- 아. 별표 1 ~ 3,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4.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산림과 ☎ 055-940-3393, FAX 055-940-891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4. 기타사항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거창군청 산림과 (☎ 055-940-3393, FAX 055-940-8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정안 내용	의 건	비고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거창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3-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공체험실 및 전시실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수탁자를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실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목공체험에 필요한 교육비, 자재비 등은 별도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DIY)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목공예 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
5. 그 밖에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 ③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목재문화체험장 게시판 및 거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09:00 ~ 18:00
-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09:00 ~ 17:00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의 징수 등) ① 체험장을 단순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징수한다.
- ③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시설물을 1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① 체험장 내 목공체험실 등 시설물에 대하여 기관 및 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체험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단체할인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인한정)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인한정)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1인한정)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거창군민, 어린이 및 청소년(만18세 이하)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체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별표 3의 경우에는 전액 및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1조(행위제한) ①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화재위험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체험장의 시설 보호, 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특산물) 판매점
2. 카페테리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체험장의 운영) ① 체험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내용·위탁조건·수탁자의 권리와 의무·위탁 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체험장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등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체험장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체험장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체험장은 제1조의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5.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배상(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거창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비의 지원) ① 군수는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강사)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공체험프로그램 체험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체험시간	체 험 료		비 고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대 품 (기계작업)	4시간 기준	3,000	2,000	※ 작품 1점당 체험료
중 품 (공구작업)	4시간 기준	2,000	1,500	
소 품 (단순작업)	4시간 기준	1,000	500	

1. 체험 종류(예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2.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3. 이용객 중 인솔자(부모 포함)는 무료 입장할 수 있다.
4. 상기 체험료는 거창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지 한다.

※ 체험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물 사용료(제7조제3항 관련)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목공체험실, 기획전시실	4시간	50,000원	
	8시간	100,000원	

1. 사용시간 동안 일반 체험이용객은 그 사용을 제한한다.
2. 시설물은 목재 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별표 3]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반 환 사 유	반 환 기 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미반환

1. 반환기준은 18시로 한다.
2.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별지 1]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표를 합니다.			
	목공체험실(초급)	목공체험실(중·고급)	기획전시실	기타시설
	사용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료 감면사유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창 목재문화체험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용료를 감면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개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조문수정
(안 별표 1)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 50132)이나 메일(plumofd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055-940-325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8. 건설 등에 관한 사항”란, “10.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8. 건설 등에 관한 사항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2) 소하천 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1건	1,000	
(3)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	별표 제57호 삭제
(4)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별표 제58호 삭제
(5)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	별표 제59호 삭제
10.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800	
(2)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5)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6)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7)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8)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9)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10)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1)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	별표 제104호 삭제

11.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1건	100,000	
(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u>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u>)	1건	40,000	별표 제138호 개정
(다)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	
(라)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u>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u>)	1건	20,000	별표 제137호 개정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1건	40,000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2) 치과기공소 관련 신고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u>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u> 수수료	1건	10,000	별표 제133호 개정
(3) 안경업소 관련 신고			
(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u>나)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u> 수수료	1건	10,000	별표 제134호 개정